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관련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이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· 수련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레지던트 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전문과목별 기준으로 정하는 한편, 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,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,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, 취소사유, 취소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치과병원 등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21. ~ 6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신청)”을“(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치과병원(수련기관) 지정신청서”를 “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수련치과병원”을 “수련치과병원 및 수련전문과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련기관”을 “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”을 “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”으로, “발급하여야”를 “발급해야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)”을“(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7조 제1항제3호”를 “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전속지도전문의 수, 연간 환자진료 실적,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”이란 별표 2 제2호의 전문과목별 기준을 말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시정명령 및 지정취소)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

2.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, 근거법령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해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, 취소사유, 취소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제19조 중 “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”로,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

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

준: 2025년 1월 1일

2.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: 2026년 1월 1일

별표 4를 삭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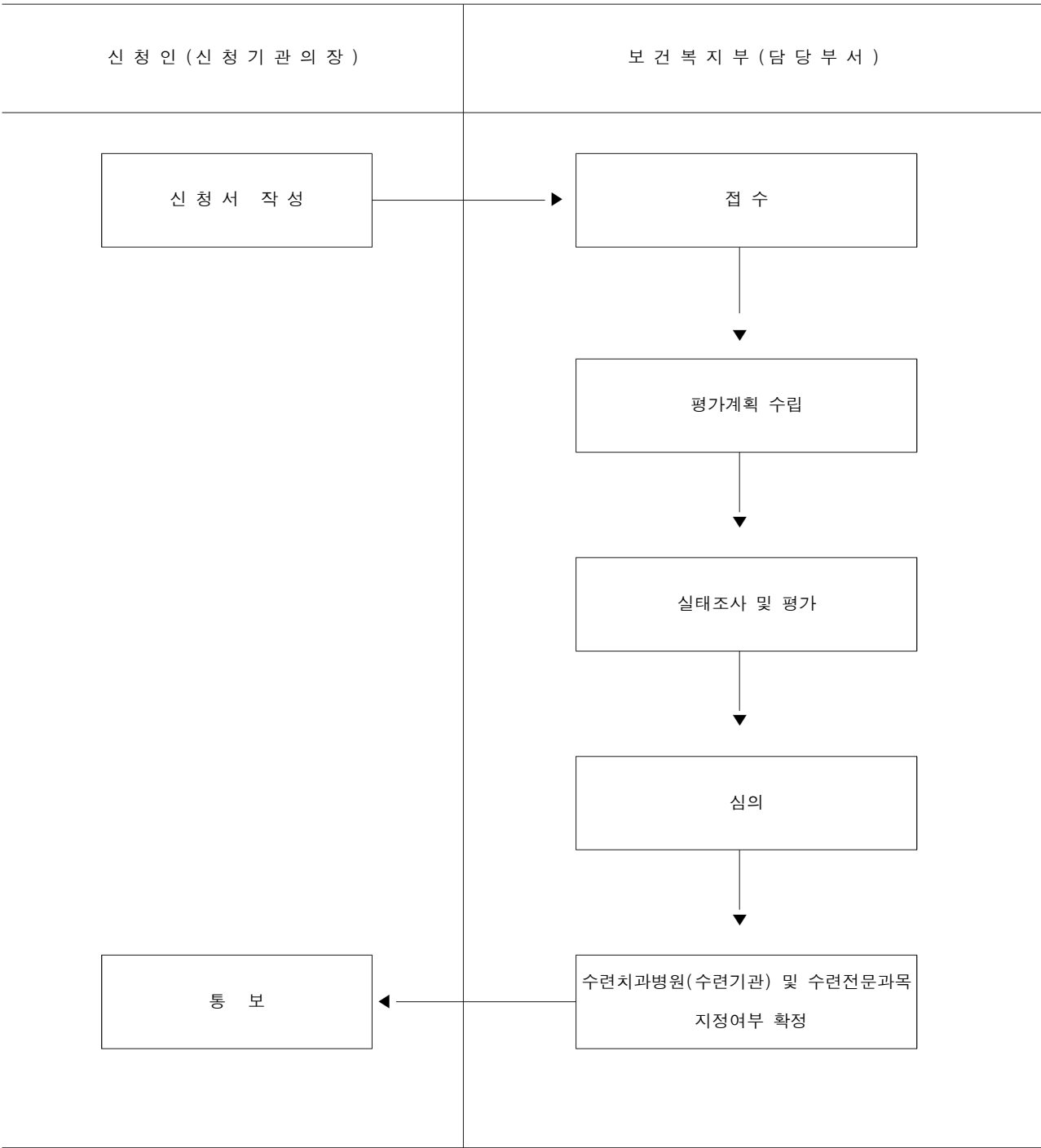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㎡]

제 호

수련치과병원(수련기관)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

명 칭:

주 소:

종 별:

대표자:

조 건:

수련전문과목:

「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련치과병원(수련기관)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의 지정신청) ① 영 제6조제1 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치과 병원(수련기관)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으 려는 경우 가.·나. (생략)</p> <p>2.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수련기관 실태 조사</p> <p>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또 는 수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.</p> <p>제6조(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의 지정기준) ① 영 제7조제1항</p>	<p>제5조(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 관 등의 지정신청) ① ----- ----- 수련치과병원, 수련 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신청서----- ----- -- 제출해야 ----.</p> <p>1.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전문과 목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수련치과병원, 수 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----- ----- ----- 발급해야 ---- --.</p> <p>제6조(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) ① 영 제7조제1</p>

제3호에 따른 인턴 과정의 수련
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1과
같고,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치
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
으며,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기
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제10조(행정처분기준) 영 제16조
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
별표 4와 같다.

항제1호다목-----

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전
속지도전문의 수, 연간 환자진
료 실적, 시설 및 기구 등 보건
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
별 기준”이란 별표 2 제2호의
전문과목별 기준을 말한다.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
항까지와 같음)

제10조(시정명령 및 지정취소) ①
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
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다.

1.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
호에 해당하는 경우: 시정명령
을 받은 날부터 6개월
2.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
호에 해당하는 경우: 시정명령
을 받은 날부터 3개월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
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

경우에는 위반사항, 근거법령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해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, 취소사유, 취소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제19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
----- 다음 각 호의 사항에
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--

----- 해야 한다.

- 1.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,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: 2025년 1월 1일
- 2.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: 2026년 1월 1일